##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950

제안연월일: 2024. 11.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
국민연금법	2201817	박희승	2024. 7. 17.	2024. 8. 20.
일부개정법률안	2203974	박수민	2024. 9. 12.	2024. 11. 14.

- 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11. 5.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271호) 및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11. 14.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597호) 등 2건의 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2024. 11. 18.).
- 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 사제2소위원회(2024. 11. 20.)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 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4. 11. 21.)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

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하여서까지 법률혼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2016. 12. 29. 선고 2015헌바 182 결정).

이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2월 분할연금 수급권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의 여부를 고려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였고, 이는법률 제15267호로 공포되어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음.

그런데,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 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종전헌법불합치결정일(2016. 12. 29.)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날(2018. 6. 19.)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 조항을 적용받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 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 우에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 우와 이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바, 법률 제15267호 부칙 제2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 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결정하였음(2024. 5. 30. 선고 2019헌 가29 결정).

이에 2016년 12월 29일 이후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적어도 2019헌가29 결정일(2024. 5. 30.) 현재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후"를 "2016년 12월 29일 이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1.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 한 경우
- 2.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u>이 법 시</u> 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u>&lt;단서 신설&gt;</u>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